



일본의 세제개혁을 위한 움직임

I. 시작하며

2012년 새롭게 시작된 아베내각은 경제부흥을 중심적인 국정목표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 중의 하나로 세제개혁을 통한 경제부흥이라는 목표를 위해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법률의 개정과 정부의 정책안이 발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8월 22일에 공포된 「사회보장의 안전재원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의 발본적 개혁을 위한 소비세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이하 “소비세인상법”이라고 한다)」과 동 법률의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응과 동 법률에서 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세제개혁방안을 정리하여 2013년 1월에 발표된 「2013년도 세제개정의 대강(大綱)(이하 “2013 정부정책”이라고 한다)」이 일본정부의 세제개혁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소비세인상법과 2013 정부정책의 배경과 개정과정 및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소비세인상법

소비세인상법은 국회에 제출될 당시에는 소비세 외에도 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전반의 개혁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은 삭제되고, 소비세의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성립에 이르게 되었다.

1. 개정의 개요

아베내각은 급속한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경제상황의 급변 속에서 세대간 또는 세대내의 공정성을 갖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속에서 2012년 2월 17일 「사회보장·세일체(税一体)개혁 대강」에 근거해서 사회보장의 안정재원 확보와 재정건전화의 동시달성을 위한 소비세법의 일부개정과 세제전체의 재분배기능회복을 위한 소득세법의 일부개정, 상속세법의 일부개정, 조세특별조치법의 일부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안전재원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의 발본적 개혁을 위한 소비세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안」을 제180회 국회(2012년 3월 30일)에 제출한다.

동 법률안은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의 협의를 거쳐 일부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소득세법, 상속세법 및 조세특례조치법의 일부 개정 등에 관련한 규정은 삭제가 되었다. 그리고 2012년 중에 소득세, 상속세 등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세제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작업이 마무리된다.

동 법률안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비세법의 개정과 관련한 3개의 조문과 시행시기와 소비세법 이외의 세제개혁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부칙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2012년 6월 26일 중의원, 8월 10일에 참의원 본회의를 거쳐 성립하게 된다.

2. 개정의 취지(소비세인상법 제1조)

소비세인상법은 제1조에서 세대간 및 세대내의 공평성이 확보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일본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함께 끊임없이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주력하면서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

의 일환으로 사회보장 안전재원의 확보와 재정 건전화 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소비세 사용처의 명확화와 세율인상을 위해 본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3. 소비세율의 인상 등

소비세인상법에서는 소비세율의 인상이 결정되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자의 사업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4년 4월과 2015년 10월, 2단계에 걸쳐서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2014년 4월 1일 이후 시행규정(소비세인상법 제2조)

(1) 소비세의 인상

소비세의 세율이 기존의 5%(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세율)에서 8%로 인상된다(소비세인상법 제2조). 새로운 소비세율은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4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본 국내에서의 사업자의 자산양도 및 보세지역에서 인수하는 과세화물에 대해서 적용되며, 2014년 4월 1일 전에 이루어지는 국내에서의 사업자의 자산양도 및 보세지역에서 인수한 화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표 1〉 소비세율의 변화

구분	공포일	시행일	세율
소비세의 도입	1988년 12월 30일	1989년 4월 1일	3%
1994년 세제개혁	1994년 12월 2일	1997년 4월 1일	5%
소비세인상법	2012년 8월 22일	2014년 4월 1일부터	8%
		2015년 10월 1일부터	10%

(2) 소비세수의 사회보장재원화

기존의 소비세수는 예산총칙에서 기초연금, 노인의료 및 개호에 충당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인상법에서는 사회보장·세제의 일체개혁이라는 취지에 입각하여 소비세는 국민의 연금, 의료, 출생률 감소대책이라는 형태로 환원되고, 다른 경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비세법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세수입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법에 정한 것 외에는 제도화되어 있는 연금, 의료 및 개호 등의 사회급부와 출생률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에 필요로 하는 경비에 사용하게 된다.

(3) 특정신규설립법인의 납세의무면제 특례의 신설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의 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1,000만 엔 미만인 경우에는 설립 시부터 2년간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 제도를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1,000만 엔 미만인 신규설립법인 중, 다른 자가 해당 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50% 넘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 다른 자의 과세대상

매상이 5억 엔을 넘는 경우에는 면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임의 중간신고제도의 신설

기존의 중간신고제도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소비세액에 따라 중간신고·납부의 횟수가 규정되어 있었으며, 그 중 확정소비세액이 60만 엔(1년간·지방소비세를 포함) 이하인 사업자(이하 “영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중간신고·납부의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소비세납부와 관련한 자금운용 등을 위해 중간신고·납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단체의 의견에 따라 영세사업자를 위한 중간신고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영세사업자가 중간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에 말일이 최초로 도래하는 6월중간신고대상기간(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의 기간으로 1회 중간신고대상이 되는 기간)부터 중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사정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간신고를 포기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중간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경과조치

① 원칙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 후의 소비세법은 시행일(2014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자산의 양도 등과 보세지역에서 인수하는 과세화물 등과 관련한 소비세에 대해서 적용된다.

따라서 소비세의 납세의무는 거래 목적물의 양도 등이 있었던 때에 발생하므로, 소비세법 시행일 전에 계약된 경우라도 인도 등이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율(8%)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기존의 세율(5%)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i. 여객운임 등

여객운임, 영화나 연극 등에 대한 입장료 등을 시행일 전에 영수한 경우, 당해 대가의 영수에 관련한 과세자산의 양도 등이 같은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때에는 기존의 세율(5%)이 적용된다.

ii. 전기요금 등

시행일 전부터 계속해서 공급 또는 제공되는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의 요금으로 시행일부터 2014년 4월 30일 사이의 요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5%)이 적용된다.

iii. 도급공사 등

사업자가 1996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 사이에 체결한 공사의 도급에 관한 계약

에 근거해서 시행일 이후에 당해 계약에 관련한 과세자산의 양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세율(5%)이 적용된다.

iv. 서비스의 제공

사업자가 1996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 사이에 체결한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계약으로 당해 계약의 성질상 당해 서비스의 제공시기가 사전에 정해질 수 없는 것으로 사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해서 지불되는 계약에 근거해서 시행일 이후에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세율(5%)이 적용된다.

② 장기할부판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자가 시행일 전에 했던 장기할부판매 등에 대해 자산양도 등의 시기의 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당해 장기할부판매 등에 관련한 할부금으로 시행일 이후에 지불시기가 도래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할부금에 관련한 부분의 과세자산양도 등에 관련한 소비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5%)이 적용된다.

2) 2015년의 10월 1일 이후 시행규정(소비세인상법 제3조)

(1) 소비세의 인상

소비세의 세율이 8%(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세율)에서 10%(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세율)로 인상된다. 새로운 소비세율은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 10월 1일 이

후에 이루어지는 일본 국내에서의 사업자의 자산양도 및 보세지역에서 인수하는 과세화물에 대해서 적용되며, 2015년 10월 1일 전에 이루어지는 국내에서의 사업자의 자산양도 및 보세지역에서 인수한 화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그 외의 규정

1)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조치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조기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제의 개혁으로 재정적인 대응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금의 중점적인 배분 등에 대한 시책을 검토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소비세인상법 공포 후 경제상황의 변화를 경제성장률, 물가동향 등의 다양한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소비세인상법 부칙 제 18조).

2) 소득세에 관련한 조치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격차의 시정과 소득재분배 기능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최고세율의 인상 등에 의한 누진성의 강화에 관련한 조치를 검토하며, 그 결과에 근거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소비세인상법

부칙 제20조).

3) 자산과세(상속세·증여세)에 관련한 조치

자산과세에 대해서는 소득격차 고정화의 방지, 노후 부양의 사회화의 진전에 대한 대처 등의 관점에서 상속세의 과세기준, 세율구조 등의 개선 및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의 젊은 세대로의 조기이전을 촉진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증여세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소비세인상법 부칙 제21조).

Ⅲ. 2013년 정부정책

2013 정부정책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 자산과세에 대한 개정,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조치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누진완화 등이 이루어진 결과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소득 4,000만 엔 이하의 경우에는 40%, 4,0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45%

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내용을 새롭게 마련했다.¹⁾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고소득자증세는 근로의욕과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으로 최고세율 적용대상자는 약 5만 명이 되고, 늘어나는 세액도 590억 엔으로 소득세수의 0.4%에 불과하는 등, 소득재분배기능과 재원조달기능의 회복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전체납세자의 84%가 최저세율 5%²⁾ 또는 10%³⁾의 적용을 받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세율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 자산과세의 개정

1) 상속세

상속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세율완화가 이루어진 결과 사망자수에 대한 과세건수의 비율이 4%에 머무르는 등, 자산재분배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편 상속세 회피를 방지·보완하는 역할을 갖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보유하는 자산을 젊은 세대에게 조기에 이전하여 소비확대와 경제활성

화를 촉구하는 것이 정책적인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일본 정부는 상속세 공제대상의 축소와 증여세 과세율의 인하를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상속세의 기초공제와 세율구조의 개선 등 정액공제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5,0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축소하며, 법정상속인비례공제의 경우에는 1인당 1,000만 엔에서 600만 엔으로 낮추고 있다. 또한 고액의 유산취득자에게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상속세의 과세가격이 6억 엔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50%, 6억 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5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소액의 유산취득자를 위해서는 소규모택지 등의 과세특례(상속세의 과세가격을 80%로 감액)에 대해서 적용대상면적의 상한을 240㎡에서 330㎡로 확대하는 등의 부담경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의 미성년자공제의 확대(20세에 도달할 때까지 1년마다 6만 엔에서 10만 엔으로)와 장애자공제의 확대(85세까지 1년마다 6만 엔에서 10만 엔으로)도 추진되고 있다.

- 1) 기존에는 1,8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었다.
- 2) 과세소득 195만 엔 이하의 경우.
- 3) 과세소득 195만 엔 초과부터 330만 엔 이하의 경우.

〈표 2〉 상속세의 기초공제 개선

구분	현행	개정안
정액공제	5,000만 엔	3,000만 엔
법정상속인 비례공제	1,0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	6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

〈표 3〉 상속세율 구조의 개선

현행		개정안	
과세가격	세율	과세가격	세율
1억 엔 이하의 금액	30%	변함 없음.	
3억 엔 이하의 금액	40%	2억 엔 이하의 금액	40%
		3억 엔 이하의 금액	45%
3억 엔 초과 금액	50%	6억 엔 이하의 금액	50%
		6억 엔 초과 금액	55%

(2) 증여세의 세율구조 개선

기존에는 1,000만 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5%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수증자가 되는 경우에는 1,500만 엔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 3,000만 엔 이하

의 금액에 대해서는 45% 등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수증자 범위에 20세 이상의 손자가 추가되고, 증여자의 연령 요건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있다.

〈표 4〉 증여세율 구조의 개선

현행		개정안(20세 이상의 직계비속)	
과세가격	세율	과세가격	세율
200만 엔 이하의 금액	10%	변함 없음.	
300만 엔 이하의 금액	15%	400만 엔 이하의 금액	15%
400만 엔 이하의 금액	20%	600만 엔 이하의 금액	20%
600만 엔 이하의 금액	30%	1,000만 엔 이하의 금액	30%
1,000만 엔 이하의 금액	40%	1,500만 엔 이하의 금액	40%
		3,000만 엔 이하의 금액	45%
1,000만 엔 초과 금액	50%	4,500만 엔 이하의 금액	50%
		4,500만 엔 초과 금액	55%



3.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조치

1) 생산 등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조치

설비투자의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의 생산 등 설비(사업용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연간 총 투자액이 감가상각비를 초과하고 전 연도에 비해 10%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새롭게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서 30%의 특별상각 또는 3%의 세액공제(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를 할 수 있는 생산 등 설비투자촉진 세제가 신설된다.

또한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액의 한도를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의 30%로 확대한다.

2) 소득확대촉진을 위한 조치

2013년부터 3년간 국내고용자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액을 기준연도와 비교해서 5% 이상 증가시킨 경우에는 당해 지급증가액의 10%를 세액공제할 수 있는(법인세액의 10%,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20%를 한도로) 소득확대촉진세제가 신설된다.

또한 고용촉진을 위해 증가된 고용자 1인당 세액공제액을 20만 엔에서 40만 엔으로 확대하여 고용률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다(소득확대촉진세제와 고용촉진세제의 적용은 선택할 수 있다).

3) 중소기업·농림수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2013년부터 2년간 상업·서비스업,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이 경영개선을 위해 상공회의소 등의 조언에 따라 점포개선 등의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30%의 특별상각을 인정하고, 자본금 3,000만 엔 이하의 중소기업에 한해서 7%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하며, 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4) 교육자금의 일괄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비과세조치

조부모가 자녀와 손자·녀(수증자)의 교육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금전 등을 일괄해서 금융기관에 신탁 등을 한 경우에는 수증자 1인당 1,500만 엔(학교 이외의 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500만 엔)까지의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증자가 30세가 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5) 주택취득 등에 관한 조치

주택대출과 관련하여 일반주택을 신축한 경우, 인정장기우량주택과 인정저탄소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기존 감세조치의 적용기한을 4년간 연장하고, 장애인용주택으로의 보수공사

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보수공사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6) 그 밖의 조치

2013 정부정책에는 앞의 조치들 외에도 동일본지진의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대출감세조치나 후쿠시마지역의 피해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제도 등도 포함되어 있다.

IV. 마치며

아베내각은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경제활성화 그리고 사회보장재원

의 안정적 확보 등을 도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 예를 들어 2012년의 개정을 통해서 소비세의 인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고, 당시에 개정에 이르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의 인상이나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시선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소비세율의 인상에 따른 복수세율(경감세율) 도입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경 석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